##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978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08일 발 의 자:박 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김경훈, 김동욱, 김영철,
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0명)

#### 1. 제안이유

-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〈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·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의견표명〉관련 내용 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,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함.(안 제10조의2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」 등

#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인권보호 조치 등)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
  - 2.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
  - 3. 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
  - 4.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
  - 5.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
  -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 으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0조의2(인권보호 조치 등) ①
	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
	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
	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
	이행하여야 한다.
	1. 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
	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
	2.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
	호 등을 위한 조치
	3. 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
	위한 조치
	4.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
	를 위한 조치
	5.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
	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
	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
	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
	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
	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
	을 실시하여야 한다.